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7. 8. 31(목), 09:00 ~ 12:00
- 장 소 :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① 목적

- 공공갈등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실무자(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갈등관리 역량 강화, 갈등관리 인식 확산을 위한 공공갈등 분석
- 지역의 갈등 유형,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실무지식 공유

② 내용

- 갈등 전문가 특강
- 교육 및 토론을 통한 갈등사안 해결 능력 향상 유도
- 공공갈등 사안과 관련된 실무자 지식 공유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③ 행사개요

- 일 시 : 2017. 8. 30(수) ~ 9. 1(금), 2박 3일
 - 장 소 :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제주시 탐동해안로 74)
 - 참 석 : 약 50명(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실무담당자)
 - 충청남도 : 공기업 팀장, 주무관
 - 시·군 : 상·하수도 직영기업 담당 팀장, 주무관
 - 공사·공단 : 충남개발공사·당진항만관광공사, 천안·아산·부여 시설관리공단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계자 합동워크숍과 연계

④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00-10:00	60'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및 과제	장창석 (전임연구원)
10:00-10:10	10'	◦ 휴 식	
10:10-12:00	110'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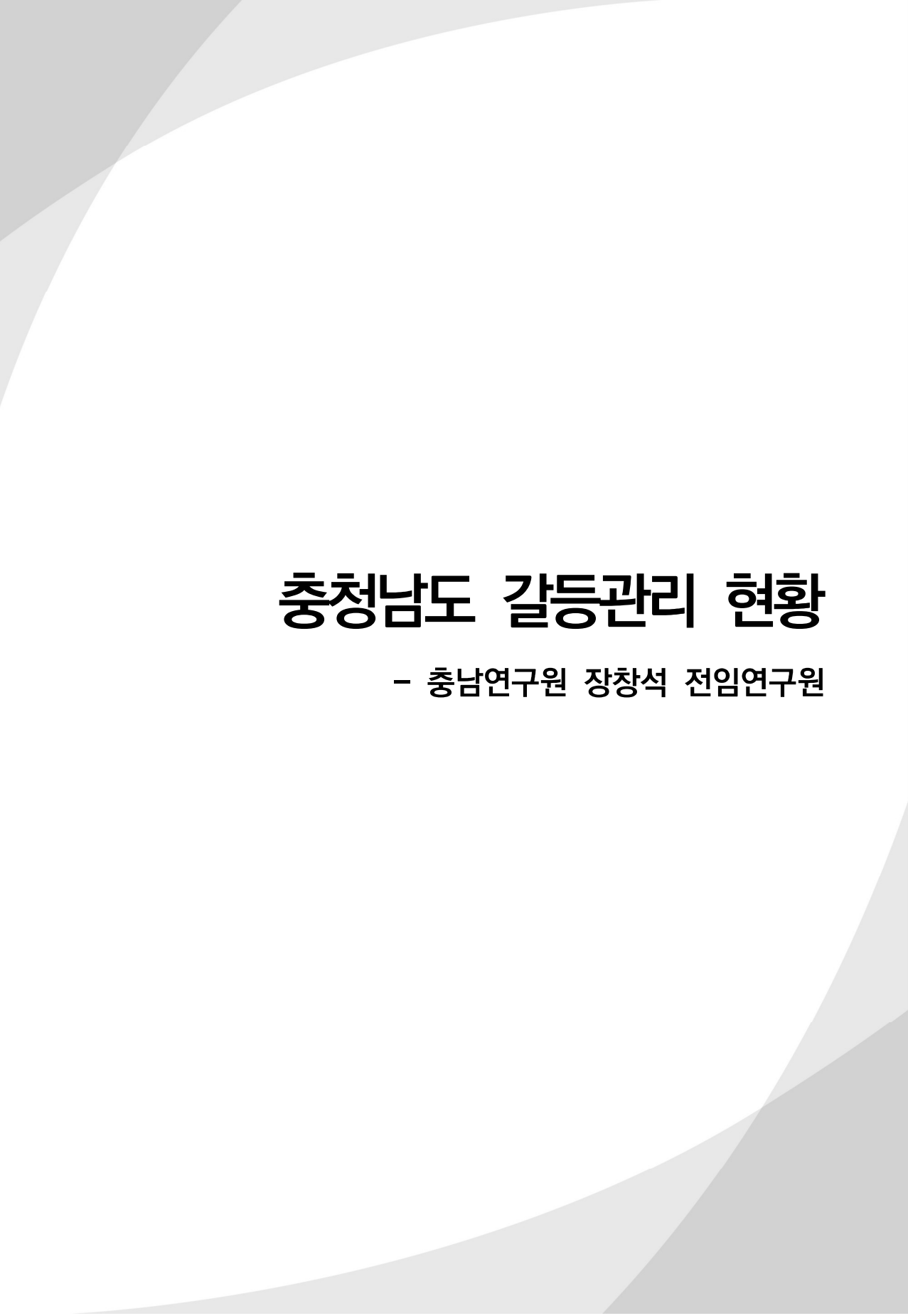
I.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7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II.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사례 2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부록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41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2017. 08. 31.

장창석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목 차



I. 충청남도 현황

1. 갈등관리 현황
2. 자치법규 현황



II. 조직 및 인력

1. 행정조직상 갈등관리기구
2. 법 제도상 갈등관리기구



III. 기능과 역할

1. 주요기능
2. 주요업무



IV. 성 과

1. 갈등관리
주요 추진사업



V. 기여와 한계

1. 기 여
2. 한 계

충청남도 현황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현황

- 2017. 8말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정·관리 갈등은 21건이며, 시·군 갈등현안 및 잠재 갈등 목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중임
- 대부분의 갈등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충청남도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연번	갈등 사업명	갈등주체	갈등유형
1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천안시 ↔ 아산시	교통
2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공군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사격장)
3	서산 장동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민 ↔ 사업장(㈜부강)	비선호시설
4	논산 바이오가스화 시범 사업 추진	주민 ↔ 논산시	비선호시설
5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논산시민 ↔ 태성화학	지역개발
6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당진시 ↔ 동부발전	비선호시설
7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충청남도, 아산·당진시 ↔ 행정자치부, 평택시	지방행정
8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	한국전력 ↔ 지역주민(송악·신평·우강)	수자원개발·이용·보전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현황

연번	갈등 사업명	갈등주체	갈등유형
9	북당진 변환소 건설	한국전력 ↔ 지역주민(석문 · 고대 · 송산 · 송악)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10	당진시 육성우목장 조성	당진낙협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
11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금산군 ↔ 주민	지역개발
12	금산 불산공장 이전	대책위 ↔ 사업자	비선호시설
13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서천군 ↔ 군산시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14	서천-군산 공동조업구역 설정	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	일반행정
15	청양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도 ↔ 청양군 ↔ 주민 ↔ 업체	석면, 폐기물
16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도, 민간사업자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
17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철도시설공단) ↔ 주민 ↔ 주민	교통관련
18	예산 대술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 ↔ 사업자	비선호시설
19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	주민 ↔ 사업자, 주민 ↔ 주민	교통
20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 체계 재편사업	충청남도 ↔ 환경단체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21	안면도관광지 개발	충청남도 ↔ 주민	지역개발

5

1. 충청남도 현황

자치법규 현황

ㄱ 충청남도는 '14. 12. 30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최초 제정 10. 11. 10) 하였으며, 현재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임

ㄴ 충청남도의 갈등관리심의 위원회는 16년말 현재 7개 시·군이 구성을 완료한 상태임

ㄷ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구분	자치법규명칭	제·개정일	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4. 12. 30	○
천안시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14	-
공주시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2. 7	○
보령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20	-
아산시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9. 25	○
서산시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6. 28	-
논산시	논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0. 31	○
계룡시	계룡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8. 9	-
당진시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 1	○
금산군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2. 31	○
부여군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30	-
서천군	서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27	○
청양군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20	-
홍성군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30	-
예산군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7. 15	○
태안군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3. 8	-

6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조직 및 인력

2. 편제 및 인력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 ☞ 충청남도는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소관업무 중 하나로 분장하여 다루어 왔음
- 자치협력팀의 업무는 선거 사무와 갈등관리 사무, 인권 사무, 주민등록 업무 등 민원 사무 등이 분장되어 있었음
 - 이후 갈등업무의 비중이 커지게 되자, 2015년 1월 갈등관리 전담부서인 갈등관리팀 (1팀 4명)을 도민협력새마을과 내에 신설함
 - 주요업무로는 공공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전문가집단 등 관리,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편제 및 인력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9

2. 편제 및 인력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갈등관리심의위원은 전문가, 의회의원, 사회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도와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의 지정·조정, 갈등관련 조례의 정비, 공공갈등 진단 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그밖에 도지사가 갈등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음

☞ 충청남도 갈등조정협의회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
- 설치 목적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됨.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선출함

10

2. 편제 및 인력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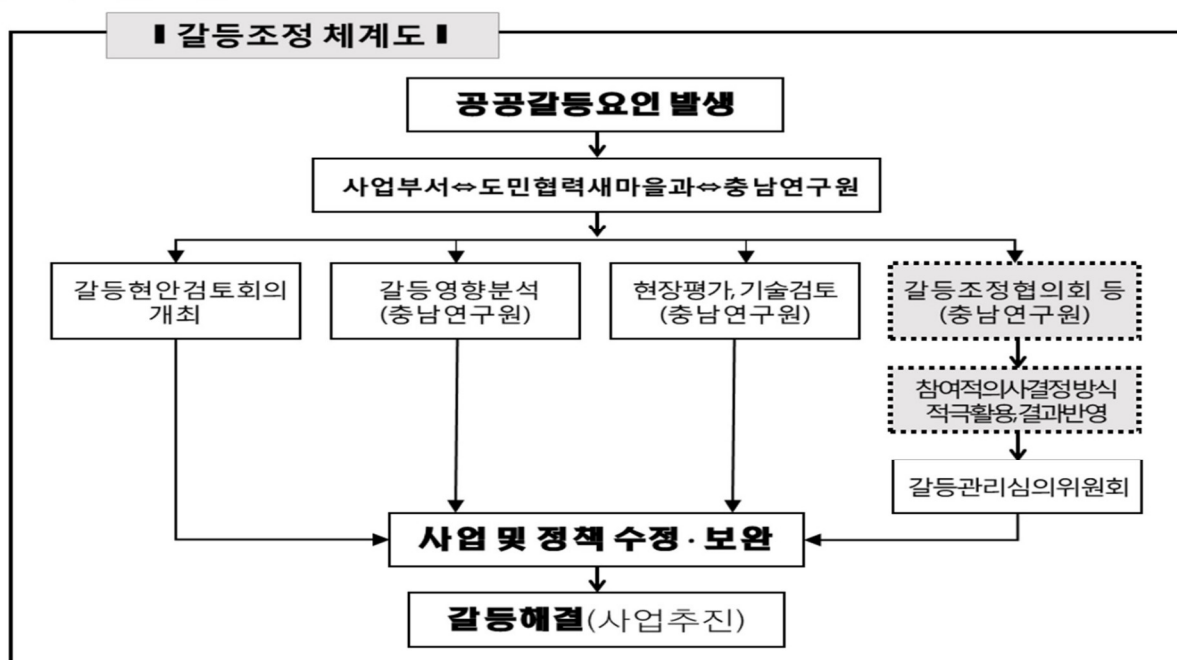
㉠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토록 되어 있음
-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위탁과 함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2016. 5)된 곳은 충남연구원으로 연구원 내에 “공공갈등연구팀”이라는 조직(1팀 2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 평균 9,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조직에서 하는 일은 갈등관련 인력 pool을 구축하여 갈등현장 조정·해결지원,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배포, 갈등영향분석 수행,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상생·협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을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11

2. 편제 및 인력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12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능과 역할

3. 기능과 역할

주요기능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매뉴얼 개발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3. 기능과 역할

주요업무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관리 교육 · 홍보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제안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 보급

갈등현장에 대한 갈등
조정 ·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

기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15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성과

4. 성과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 공공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도내 갈등관리 목록(대상) 지정
 -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결과 심의
- ㉢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의지가 있는 사업 선정
 - 20명 이내로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
- ㉣ 갈등관리 맞춤형 교육
 - 지역주민·사회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대상
 -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전환 교육(워크숍, 위탁교육)

17

4. 성과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갈등현장 지원 활동 전개
- ㉡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갈등관리 체계 구축
 - 갈등의 특성과 사안별로 구분 제작 실효성 제고
- ㉢ 공공갈등 사전 진단체
 - 신규 공공정책 수립, 다수이용 공공정책, 선호시설 및 비선호 시설
 - 면밀 검토 진단(정책 개요, 갈등 내용, 대응계획, 해결방안 등)
- ㉣ 갈등문화행사개최
 -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대상(약 150명)
 - 공공갈등 교육 연극 및 모의 갈등조정협의회 경연대회

18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여와 한계

5. 기여와 한계

기여

- ㉠ 법적,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서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 갈등관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조직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다면 조직 운영이 보다 효율적임
- ㉡ 갈등관리의 역할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음
 - 보통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충청남도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제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5. 기여와 한계

한계

㉠ 갈등관리평가 체계 구축 필요

- 갈등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주민참여형 갈등조정 미흡

-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해결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실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의 문제 접근 방법 지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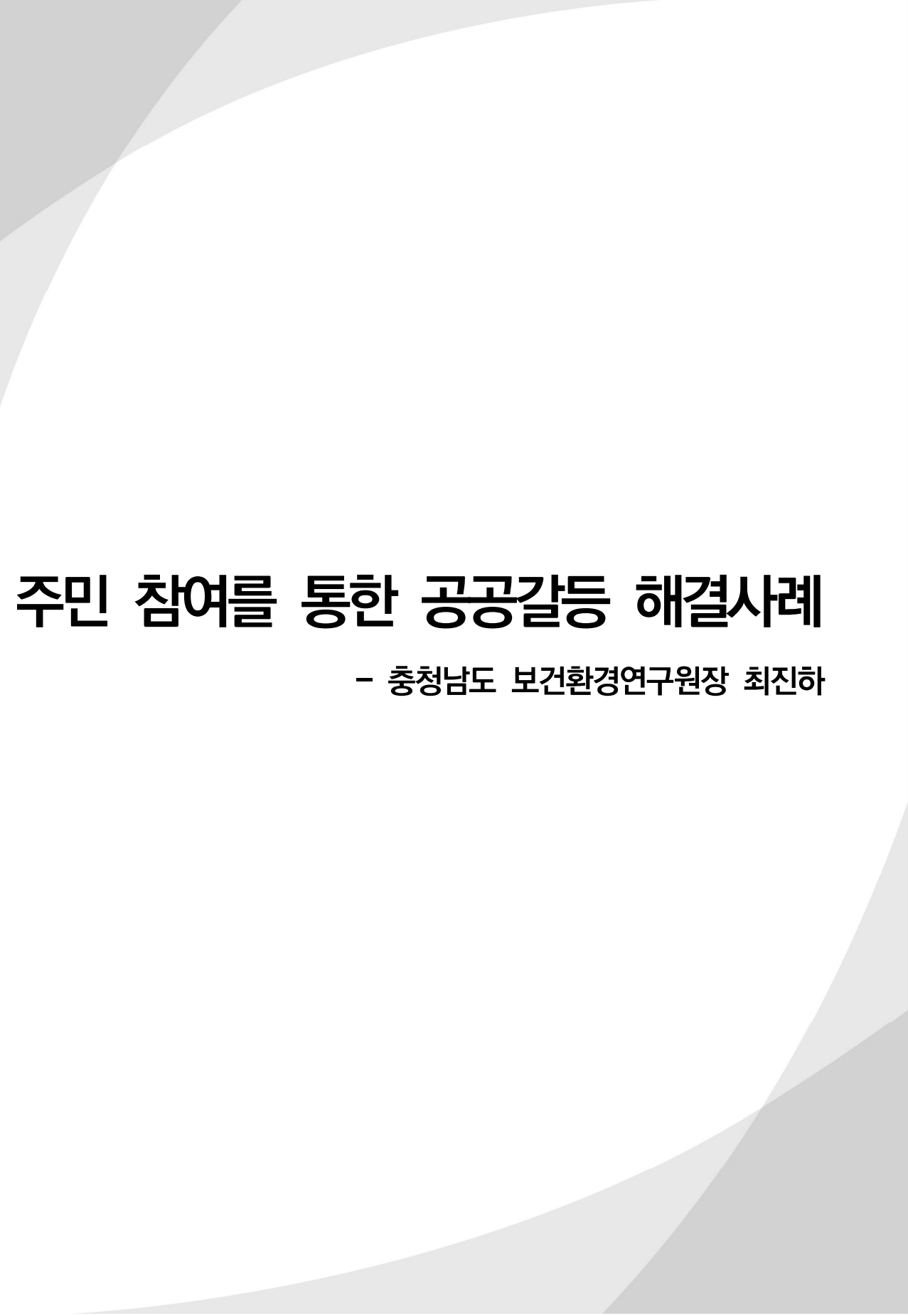
㉢ 맞춤형 대응 부족

- 중앙정부의 공공정책은 갈등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지방의 권한이 미약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의 권한 확대와 맞춤형 갈등대응 전략이 요구됨

21



감사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사례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사례 ◀

2017.08.3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1

CONTENTS

▶ 제1장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1. 공공갈등의 유형 변화
2. 공공갈등의 행태 변화
3. 공공갈등의 문제점과 대안

▶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1.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2.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3.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갈등

▶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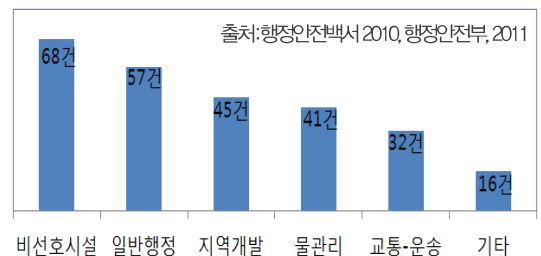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제1장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 공공갈등의 유형 변화

- 01 지방자치 이후 지역갈등의 새로운 양상은 '지역이기주의'로 대표됨
- 02 개인적인 차원의 이기주의가 지역이란 공간 범주 내로 집단화된 것을 의미함

공공갈등의 유형별 발생현황 (95-10년말 기준)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

시기	1980년대 중반 이전	1980년대 중반-1990년대	1990년대 이후
갈등의 표출	갈등잠복, 갈등억압	갈등의 폭발적 표출	갈등의 일상화, 현재화
갈등의 영역	국가-정치영역	시장-경제 영역	사회-시민사회 영역
갈등의 형태	정치갈등, 이념갈등	경제갈등, 분배갈등	복합갈등, 다원적 갈등
갈등의 결과	정치체제의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의 분배구조 개선	시스템효율성 저하, 신뢰의 부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제1장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공공갈등의 행태 변화

- 01 외연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 02 최근 공공갈등 관련 주제들은 동일한 공간적 범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 갈등보다 집단행동을 통한 주장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기 쉬움
- 03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는 갈등의 심화와 확산 역시 집단적 유대감을 이용하여 집단적 표출로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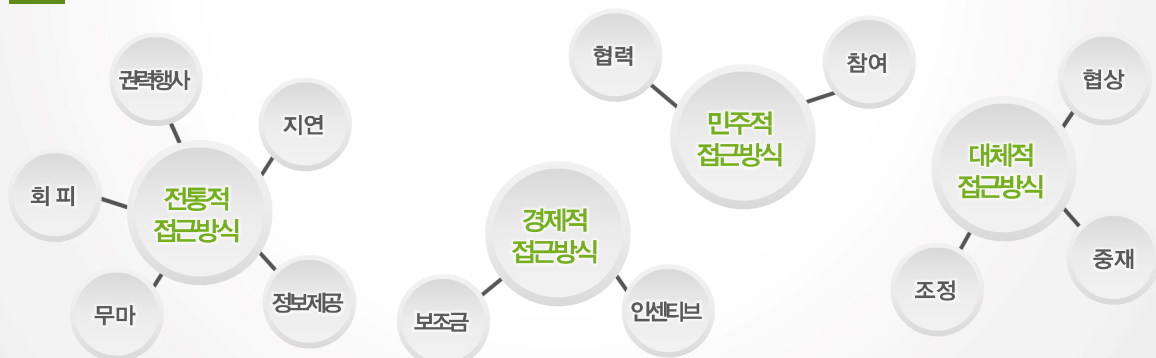
5

제1장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공공갈등의 문제점과 대안

- 01 공공갈등관리
 - ✓ 갈등이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은 갈등이 초기의 잠재적 단계에서 현실화되면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 ✓ 결국 갈등관리의 목적은 갈등의 제거, 방지, 통제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치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을 감소 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02 공공갈등관리 유형



6

제1장 공공갈등 현황과 분석

공공갈등의 문제점과 대안

03 정책과정에 따른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정책과정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갈등관리 방법	- 갈등영향분석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 대체적 갈등해결방법 - 행정소송, 심판, 직권 중재	- 합의안 수행여부 평가 - 갈등관리시스템 만족도 조사
갈등관리 목적	사전적 예방	사후적 관리	차후 갈등의 예방

What is
the
PROBLEM?



7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갈등 개요 및 진행경과

위 치	보령시 신항동 산 253-1
소 속	공군방공포사령부(평택소재)
주요인력	96명
주 사격종목	대공포, 연1회 미사일사격
운영기간	150일/년

- '08. 6 : 지역주민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문제 공식 제기
- '09. 4~9 :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 '10. 6 :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보도
- '10. 6~9 : 주민건강영향조사(보령시, 호서대)
- '11. 6 :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요구
- '11. 6~12 : 갯배마을 환경영향조사(환경부)
패류(굴) 카드뮴 기준초과, 화약성분 검출(RDX)
- '12. 8 : 국회방문 및 사격장 이전 등 건의
- '12. 9~12 : 맹꽁이 서식지 조사완료, 해양오염영향조사(공군)
- '12. 11 : 보령 공군사격장 민원지역 주민설명회(환경부)
- '13. 3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대책회의(충청남도)
- '13. 6 : 사격장 주변 수산물 안정성 검사(해양수산부)
- '13. 12 :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주민간담회(충청남도)
- '14 : 선행연구 분석 및 관계기관 워크숍(충청남도, 충남연)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배경 및 원인

보령 공군사격장 운용과 관련하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 및 탄피의
해양퇴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건강악화로 주변지역 주민들 민원제기

성격(특성)

- 01 보령시 갯배마을 인근 공군사격장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임
- 02 비선호시설(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안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쟁점

쟁점 1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8군 사격장을 시작으로 1981. 7 한국육군으로 이관, 1991. 7 부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사격장으로 운영중임
- 사격훈련은 모형비행기를 띄워 해상에서 타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탄두·탄피·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해 해양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쟁점 2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부대이전

- 지역주민들은 약 50년간 운영된 사격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 피해의 재발장지를 위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주장함

11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이해관계자

국방부	- 보령 공군사격장 이전 계획 없음 09년도부터 3년마다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환경 영향조사 - 매년 軍 자체에서 탄두수거 (사업비 2억) ※ 폭발위험성 등으로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
환경부	사격장 주변지역 암 발생 역학조사 관련, 내부적으로 암 발생 현황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진행 중
충청남도·보령시	- 공군사격장은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시설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운영중임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 추진 중
지역주민	- 보령 공군사격장은 연 150일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 -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 중

12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 협의체 구성

목적 사격장 주변지역 및 지역민의 환경피해관련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해결 도모

명칭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위원 16명(공동대표4인, 위원 12인)

—충남도 4인, 보령시 4인, 지역주민 4인, 전문가·단체 4인

* 설치근거: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호

기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등

기간 1기:2년(2015.3~2017.3)

2기:2년(2017.3~2017.3)

운영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

*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

주민주장보령공군사격장 피해지역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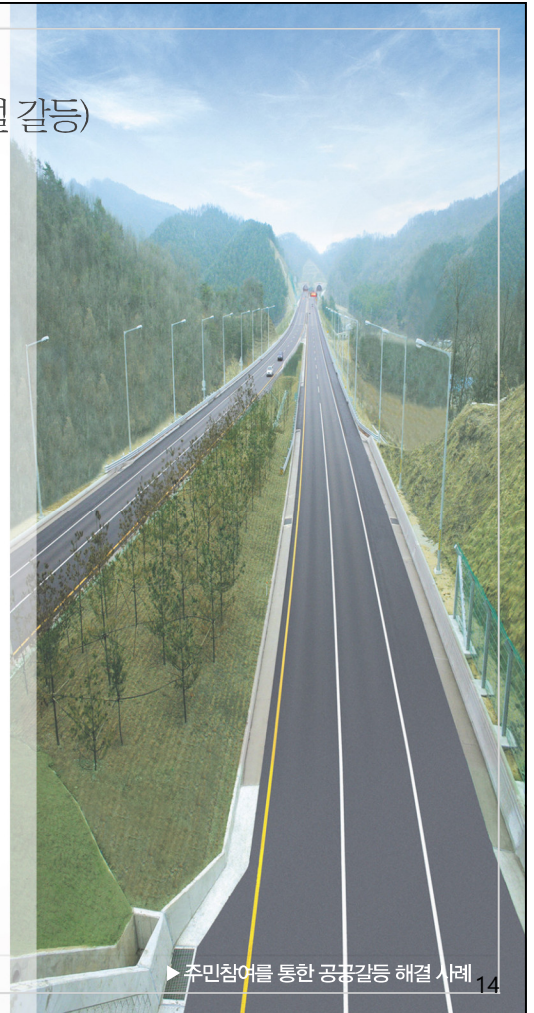
13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 갈등 개요 및 진행경과

사업명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전북 익산시
사업규모	138.3km(왕복 4~6차로)
총사업비	27,238억 원 (보상비 포함)

- '14. 02. 2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포스코건설 → 국토부)
- '14. 03. 28 :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의견 제출
- '14. 04. 09 : 국토교통부 예산군 방문 의견 전달
- '14. 07. 1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 '14. 07. 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7.24~8.21)
- '14. 08.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광시면사무소)
- '14. 08.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의견서 제출
- '14. 09. 30 : 읍·면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4. 10. 17 : 제2차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촉구에 관한 건의 (제2차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위→국토부, 충청도, 예산)
- '14. 11. 13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 '15. 01. 19 : 주민설명회 (포스코, 예산문화원)
- '15. 02-03 : 제3차 제안공고에 의한 의견회신 및 제안서제출
- '15. 05. 0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 → 포스코)
- '15. 05. 13 : 대책회의 (주민, 국토부, 포스코, 충남도, 예산)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14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배경 및 원인

고속도로 노선 중 예산군 통과노선이 대흥면 슬로시티 인근지역을 지나면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파괴, 환경훼손을 이유로 집단민원발생

성격(특성)

- 01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선정으로 인한 갈등임
- 02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15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쟁점

쟁점 1 고속도로 건설

쟁점 2 고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노선 중 예산군 대흥면을 통과하는 약30km의 구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 대흥면 통과 노선은 주민거주지역 통과 노선으로 설계, 주민의 정주권 · 재산권 파괴와 인근 문화재 및 자연환경 (임존성,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황새마을, 예산대흥 슬로시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임
- 대흥면 지역은 우리나라 여섯 번째 슬로시티로 지정,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슬로시티 지속과 운영에 방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임

쟁점 3 스마트 IC건설

- 대흥면 통과구간에 IC와 쇼핑몰이 복합된 스마트 IC가 건설될 예정임
- 휴게소와 복합된 스마트 IC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과 원도심 상권 붕괴에 우려 제기
- 예당호가 조망되는 곳에 스마트휴게소 건설을 위하여 대흥면을 통과하고 있다는 주장

16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이해 관계자

국토교통부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달성, 수도권과 남부지역간 교통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공사업임 -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타 공공사업 사례에서도 갈등으로 인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속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시행사	- 최초 제안은 대흥면을 관통하는 노선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우회 노선을 제안하였음 -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협의가 필요함

17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이해 관계자

예산군	- 예산군은 충남서부지역 교통요충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예산군에서는 지역의 발전 위한 고속도로의 필요하나, 다수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전 위해 우회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 추후 국토교통부, 포스코와 논의를 통해 군에 유리한 노선 확정 계획
지역주민 (대흥면)	- 대흥면은 예당호, 임존성, 대흥동헌과 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가로지는 기존 노선(안)은 문화재 및 환경, 자연경관의 파괴 가능성 우려 의견 - 대흥면 경유 노선은 시행사가 예당호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로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봉수산 동쪽으로의 우회 요구함 -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으로 많은 지역이 수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시에 기존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함께 2개의 고속도로가 위치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짐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만 남겨지게 되며,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임

18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 협의체 구성

명칭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충면 노선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위원 15명(위원장 1인, 위원 14인)
 - 지역주민 3인, 시행사 2인, 전문가 5인
 공무원 5인 (국토부 1인, 충남도 2인, 예산군 2인)

기능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등 고속도로 건설 협의·조정

기간 2015.9.9 ~ 갈등 해결 시까지

운영 고속도로 노선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협약



19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 갈등 개요 및 진행경과

사업명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사업위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부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사업규모	374.1Gcal/h(최대열부하량), 97MW(전기)
총 사업비	6,116억 원(민자)
시설내역	열병합발전시설 : 고형연료(RDF→SRF) 열전용보일러 : LNG
시설기간	2010년 ~ 2020년
시행자	내포그린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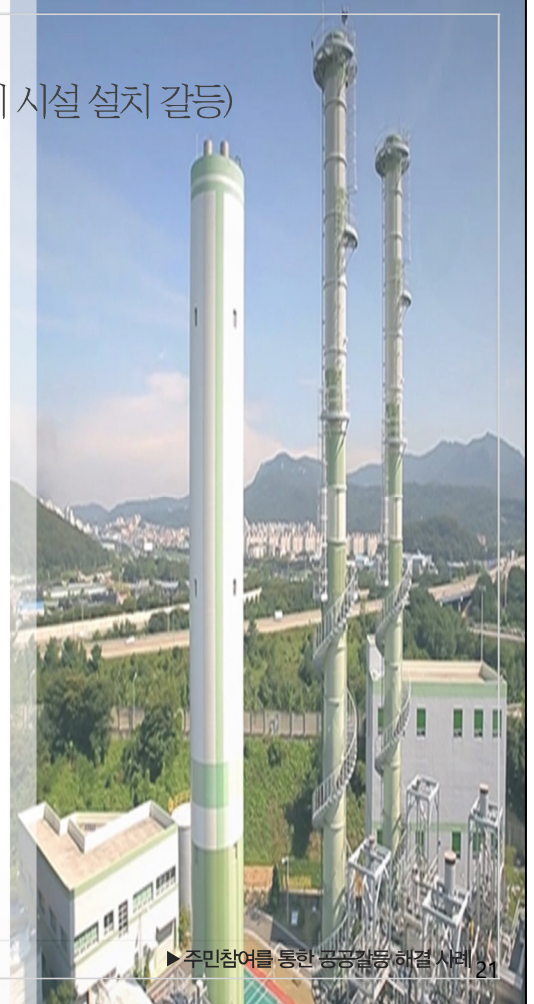


20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갈등 개요 및 진행경과

- '08. 5 :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 개발면적 60만㎡ 이상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의무시설
- '08. 7 :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지경부)
- '09. 2 : 지역난방공급지역 지정. 고시 (지경부)
- '10. 1 : 집단에너지 사업추진 협약식 체결
(도, 중부발전, 롯데건설, 충남개발공사)
- '10. 8 : 집단에너지 허가 (지경부→롯데건설)
- '11. 8 : 내포신도시 열배관 공사 착공 (초기생활권 지역)
- '12. 2 : 중부발전 사업 참여 포기
(환경부 정책변화로 RDF 사용 무산)
- '12. 5 : 집단에너지사업 고형연료 변경 검토 요청 (롯데건설)
- '12. 8 : 임시보일러(4) 설치 완료 및 열공급 (도청사, 롯데아파트)
- '13. 7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신청
(롯데건설→산업통상자원부)
- '14. 1~ 12 : 도 정책간담회 운영을 통한 갈등해결 노력
- '15. 3~ 현재 :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21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배경 및 원인

내포신도시 주민거주지역 열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용연료 변경)로 인해 인근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함



성격(특성)

- 01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한 갈등임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쟁점 1 광역화 사업 중단

- 2008년 시설 계획 시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도시, 홍성군, 예산군의 쓰레기 권역별 처리 타당성 검토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 국비자원을 전제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RDF 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의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의 정책변화로 국비지원이 불가피해짐
- 광역화 '환경·에너지 타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RDF 생산시설 중단에 따른 당초 계획된 사용연료 수급 불가능 함

쟁점 2 사용연료 변경으로 인한 민원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사업 계획 전면 중단으로 계획대로 입주중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열 공급 차질에 따른 대책 요구됨
- 광역화 시설에서 내포신도시 단독시설로 추진 중이며, 집단에너지시설 사용(대체)연료 검토(RDF→RPF)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됨
- (당초) 목재 펠릿, RDF, LNG ⇒ (변경) 목재 펠릿, SRF, LN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고품연료 제품인 RDF, RPF → SRF로 통합(13.4.1시행)

23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이해 관계자

충청남도	■ 현재 내포신도시는 임대보일러 총 4기(16Gcal/h)가 운영 중이나, 인구증가와 시설증가로 인해 열수요 증가가 예상됨 ■ 16년 하반기 이후 신도시 열수요가 35Gcal/h로 추정되며, 임시보일러 운영한계가 초과되어 열 공급 시설의 설치 및 가동이 시급한 상황임 ■ 내포신도시의 조기 안정적 정착과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
홍성군 예산군	■ 국비확보 실패로 道·홍성군·예산군의 자체 예산으로 내포신도 시내 광역화 시설의 추진은 어려움 ■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 지역 생활폐기물은 아산시에 위탁 처리 중이며, 예산군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예산군 자체 처리중임 ■ 2021년까지 현재 처리시스템의 어려움은 없으며, 광역화 시설 설치는 기존시설의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 추진이 가능함

24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이해 관계자

지역주민

-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열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소외감 및 피해의식 등으로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함
- 내포신도시는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맞는 에너지 수급계획이 필요함

25

제2장 충청남도 사례분석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협약체 구성

명칭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민관협의회

위원 28명

— 주민대표 12명, 전문가 5명, 환경단체 2명, 시행사 2명
도 및 시군 공무원 2명, 신도시개발시행사 2명

기능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현안사항 및
앞으로 추진방향 등 토의 및 조정

기간 2015.3.10 ~ 갈등 해결시까지

운영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협의



내포신도시 운영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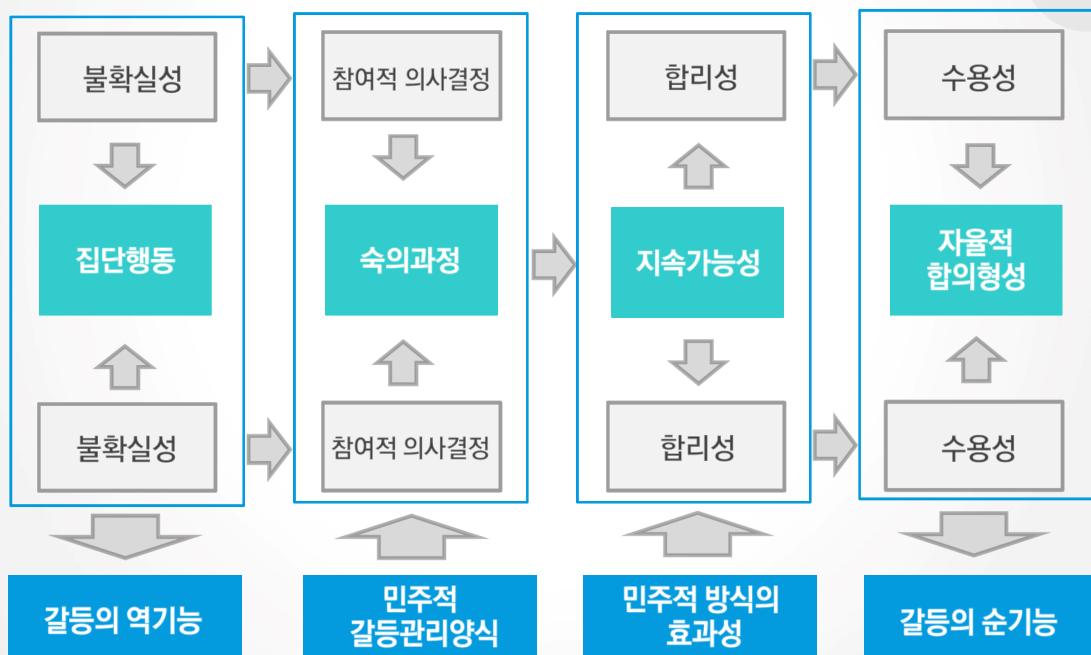


26

▣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민주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의 순기능적 전환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01 협력적 거버넌스 정의

- ✓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함
- ✓ 협력적 거버넌스는 비정부조직이나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의미함
- ✓ 협력적 거버넌스는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단순한 의견제시나 상담 이상의 직접적인 참여를 의미함
- ✓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집합적인 행동을 의미함
- ✓ 협력 거버넌스는 의견 일치를 추구함
- ✓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함

29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02 협력거버넌스 기구의 운영

지방정부간 공공갈등관리 및 협력기구 (충청남도)

주요기구	주요기능	근거
갈등관리심의회	- 도사무의 갈등관리관련 사항의 심의	충남조례 (제3544호)
갈등조정협의회	-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기구	충남조례 (제3544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광역행정기관간의 갈등조정 - 광역행정기관과 기초행정기관과의 갈등조정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기초행정기관 간 갈등조정	지방자치법 (제149조)
행정협의회	- 2개 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사무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조합	- 2개 이상 지자체의 공동사무를 심의, 의결	지방자치법 (제159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갈등조정	지방자치법 (제168조)

30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노력

01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갈등관리에 대한 민주적 접근방식임

02 갈등관리 방법을 활용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요인들이 필요함

- ✓ 일반시민의 공적 참여와 대표성 확보
- ✓ 충분한 정보와 학습기회의 제공
- ✓ 심사숙고의 토의과정
- ✓ 공정하고 의지 있는 전문적 진행자(주최자)
- ✓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
- ✓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적 전환

31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노력

01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는 공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주장하게 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02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 과거의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정치적 갈등상태에서,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그리고 주민들 간 이익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03 따라서 갈등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갈등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거나 회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을 성숙된 관리체제로 해결하려는 노력, 즉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의 사회화'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함

0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적 갈등관리 방식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32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타협과 조정 필요

- ✓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갈등은 그 성격이 이익갈등인 경우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나, 가치갈등인 경우 사업자체를 문제로 삼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움
- ✓ 현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갖는 문제점과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우려, 정주여건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 이러한 우려는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진행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이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합의형성단계

- ✓ 현재 표출되는 갈등은 관-관, 관-민, 민-민 갈등의 복합적 형태로 나타남
- ✓ 조급한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미흡, 정보공개 부족, 공공사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인식 불일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이에 이해관계자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합의형성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33

제3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공식적 협의기구 형성 및 운영

- ✓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신 및 대립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의사소통 창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소한 의견대립에도 갈등이 증폭되기 쉬움
- ✓ 이해관계자 면담결과 관련기관 ·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함
- ✓ 이에 공식적 협의기구인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 · 운영한다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34



▶ **감사합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 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회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